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30일 10시 10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	3

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

2014.04.17 조회수 685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1-0007
담당부서	노인장애인과
상위법령	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
조례	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
유형	1호 - 지정
등록사유	보건위생
법령공표일	신설규제
존속기한	2011-01-10
규제시행/폐지일	2011-01-10
규제내용	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의 규정 중 “붕괴, 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 1.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. 하천,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. 산사태, 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지정 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 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1-0006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1-0008

Yeosu Web Contents

